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4. 1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4.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윤형식)

가. 제안이유

○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의단위별로 지급(안 제4조제1항)

○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차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4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지?	○ 특별히 안 주어도 상관은 없으나 고문변호사의 요청이 있고 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함
○ 모든 경제인은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의 요구로 인한 건 납득이 안 됨. 고문변호사는 몇 명인지?	○ 4명입니다.
○ 수임료는 얼마인가?	○ 수당은 월 20만원이고 수임료는 건마다 다르며 수임건수는 2000년 이건방 1건, 이양원 6건, 한성영 5건, 이현영 5건입니다. 2001년 이양원 5건, 김동섭 2건, 이현영 1건입니다.
○ 부가세를 주면 수임료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 예. 수당은 부가세를 지급 안하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취지에 동의함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의결년월일	2001. 4. 24 (제86회)

제출년월일 : 2001. 4. 10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주요골자

-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안 제4조제1항)
-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4조제3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급한다"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u>지급한다.</u> ②(생략) ③<신설></p>	<p>제4조(소송비용 등) ①.....<u>지급한다.</u>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차수급 및 승소사 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 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